

2023년 신진여성연구원 산업현장진출 지원사업 모집 공고

중소·중견기업의 R&D인력 확보 애로 해소 및 신진여성연구원의 산업 R&D분야 진출과 성장을 지원하고자, 2023년 「신진여성연구원 산업현장진출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7일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이사장 문애리

1. 사업 목적

- 중소·중견기업의 여성R&D인력 채용 및 역량강화 지원으로, 산업현장의 신진 여성연구원 진출 촉진 및 역할 증대

2. 신청 자격

가. 지원 인력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성 인력으로,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지원 자격 취득 여성

※ 2023년 8월 졸업예정자 포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성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서 **이학(理學) 또는 공학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여성**
 -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및 기술대학
 - 나. 「고등교육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대학원
 - 다.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 라.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2.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산업기사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여성**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위 또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는 여성

※ 의학계열 또는 산업 디자인 분야의 학위 소지자인 경우 연구개발인력으로 채용 시 신청 가능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이공계 계열에 한함

※ 인력이 경력이 없어도 사업 신청 가능

나. 지원 기업

- 사업신청일 기준, 연구소(연구개발부서)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 하기 조건 중 1개에 해당하는 기업 신청 가능

-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의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인정받은 기업
- 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
- 연구소기업: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 3, 시행령 제13조에 의해 설립한 기업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 연구개발서비스업: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제18조에 의해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인정받은 기업

- 기업별 총 2명까지 지원인력 신청 가능

3. 지원 개요

가. 지원 기간: 2023년 6월 1일 ~ 2023년 10월 31일(5개월)

나 선정 규모: 00명 이상

다. 지원 내용: 신진여성연구원을 신규 채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해당인력의 인건비 일부 및 교육훈련 지원

- 인건비 지원: 기업에 지원인력당 1,000만원(약 200만원/월, 총 5개월) 지원

※ 기업은 지원인력에게 정부지원금을 포함하여 기준연봉* 2,7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지급

* 기준연봉: (기본급+월정액수당)×12개월, 상여 포함, 퇴직금 제외

※ 지원기간 종료 시까지 최초 선정인력 고용 유지 시, 추가 지원금 지급 예정

- 교육 지원: 신규 채용 신진여성연구원 대상으로 교육훈련 지원

※ 지원기업은 지원인력이 교육훈련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함

① (필수) 연구역량 강화 교육 지원

※ 선정된 인력 대상으로 차후 별도 안내 예정

② (필수) 전문기술 교육비 지원

※ 자기주도형 전문기술교육비 지원: 1회/인 이상 신청 필수, 100만원/인 이내

라. 지원 조건

- 2023.01.01.~2023.06.01. 기간 사이에 채용을 했거나 채용 예정인 경우

※ 정부지원금은 2023년 6월 급여부터 지원

4. 신청 방법

가. 신청 기간: 4월 17일(월) ~ 5월 16일(화)

나. 신청 방법: W브릿지 사이트(www.wbridge.or.kr)에서 온라인 접수

※ W브릿지 접속 및 로그인 → 일자리 → 신진여성지원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기업과 채용(예정)인력 모두 사업 신청을 완료하여야 함

다. 제출서류

○ 신청기업

구분	제출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비고
1	기업 신청서 (서식 1호)	- W브릿지(www.wbridge.or.kr)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제출	필수
2	사업자등록증	- 신청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필수
3	기업 자격요건 증빙서류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 벤처기업 확인서 - 이노비즈 확인서 - 연구소기업 등록증	필수
4	연구개발인력 현황 (서식 2호)	- [서식1호] 연구개발인력 현황	필수
5	국세청 발급 재무제표증명원	- 국세청에서 발급된 2020년~2022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2022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2019년~2021년 제출	필수
6	중견기업 확인서	- 중견기업확인서	해당 시
7	가점 증빙서류	- 가족친화인증서 사본 - 여성기업확인서 사본 - 청년친화 강소기업 선정서 사본	해당 시
8	기타	- 기업 재산권관련 서류(특허등록 및 출원증빙자료 등) 사본	해당 시

※ 인증서류 및 증빙서류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신청인력

구분	제출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비고
1	인력 신청서 (서식 3호)	- W브리지(www.wbridge.or.kr)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제출	필수
2	학위증명서 또는 자격증 사본	- 신청 인력의 최종학위증명서 또는 국가기술자격 산업기사(또는 그 이상 자격의) 자격증 사본 -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필수
3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http://total.kcomwel.or.kr) 개인 공동인증서 로그인 → 증명원 신청 발급 →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내역서 → 보험구분(고용), 조회구분(상용) → 고용/ 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전체) 출력 - 공고일 이후 발급본 제출(공고일 이전 발급본 불인정) - 화면 캡처본 불인정 - 채용예정인 경우 선정 후 협약 시 제출	필수

5. 선정절차 및 평가

가. 평가기준 및 방법

- 요건심사 및 전문가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 결과 **60점 미만일 경우 탈락**
- 평가 기준 및 방법 ※ 선정평가 심사를 위하여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절차	평가 기준 및 방법																												
요건 심사	<p>접수된 신청서에 대하여 기본 자격요건의 부합여부 심사</p> <p>○ (심사항목) 신청자격 부합성, 참여제한 여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여부 등 검토 ○ (심사결과 조치) 신청내용이 공고내용과 부합하지 않을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p>																												
선정 평가	<p>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에서 지원여부 서면평가</p> <p>○ (평가방법) 신청서 및 관련 서류에 대하여 서면평가 실시 평가결과 60점 미만인 기업 탈락, 고득점 순으로 선정(총 50명 이상) 학사 학위자 70% 이상 선발</p> <table border="1"> <thead> <tr> <th>항목</th> <th>지표</th> <th>배점</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기업</td> <td>경영·재무역량</td> <td>성장성, 수익성, 안전성, 활동성 등에 대한 재무 건정성</td> <td>20점</td> </tr> <tr> <td rowspan="3">연구개발역량</td> <td>연구장비·시설·공간 등 연구인프라 보유 정도</td> <td rowspan="3">20점</td> </tr> <tr> <td>산업재산권 및 연관 기술/연구과제 실적 보유 정도</td> </tr> <tr> <td>매출액 대비 연구개발투자 실적(최근 3년간)</td> </tr> <tr> <td>사업성과의 실현가능성</td> <td></td> </tr> <tr> <td rowspan="3">인력활용계획우수성</td> <td>인력활용 및 기술연구개발 목표의 구체성</td> <td rowspan="3">20점</td> </tr> <tr> <td>사업수행 계획 및 수행능력</td> </tr> <tr> <td>- 인력양성 및 활용계획의 타당성 - 활용계획의 실현가능성</td> </tr> <tr> <td>인력매칭평가</td> <td>담당 업무(연구분야)와 전공 일치도 개인의 R&D 분야 발전 가능성</td> <td>30점</td> </tr> <tr> <td>우대가점</td> <td>정규직 채용, 지방소재 기업 등</td> <td>10점</td> </tr>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합계</td> <td>100점</td> </tr> </tbody> </table>	항목	지표	배점	기업	경영·재무역량	성장성, 수익성, 안전성, 활동성 등에 대한 재무 건정성	20점	연구개발역량	연구장비·시설·공간 등 연구인프라 보유 정도	20점	산업재산권 및 연관 기술/연구과제 실적 보유 정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투자 실적(최근 3년간)	사업성과의 실현가능성		인력활용계획우수성	인력활용 및 기술연구개발 목표의 구체성	20점	사업수행 계획 및 수행능력	- 인력양성 및 활용계획의 타당성 - 활용계획의 실현가능성	인력매칭평가	담당 업무(연구분야)와 전공 일치도 개인의 R&D 분야 발전 가능성	30점	우대가점	정규직 채용, 지방소재 기업 등	10점	합계		100점
항목	지표	배점																											
기업	경영·재무역량	성장성, 수익성, 안전성, 활동성 등에 대한 재무 건정성	20점																										
	연구개발역량	연구장비·시설·공간 등 연구인프라 보유 정도	20점																										
		산업재산권 및 연관 기술/연구과제 실적 보유 정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투자 실적(최근 3년간)																											
사업성과의 실현가능성																													
인력활용계획우수성	인력활용 및 기술연구개발 목표의 구체성	20점																											
	사업수행 계획 및 수행능력																												
	- 인력양성 및 활용계획의 타당성 - 활용계획의 실현가능성																												
인력매칭평가	담당 업무(연구분야)와 전공 일치도 개인의 R&D 분야 발전 가능성	30점																											
우대가점	정규직 채용, 지방소재 기업 등	10점																											
합계		100점																											

○ 우대 사항(총 10점)

구분	우대 사항	증빙 서류	배점
1	지원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	-	2점
2	지방소재(서울, 인천, 경기 외의 지역) 기업	인력 근무지 기준	2점
3	가족친화 우수기업	가족친화인증서	2점
4	초격차 분야 기업		1점
5	2022년 K-Girls' Day 참여 기업	WISET에서 자체 확인 예정	1점
6	여성기업	여성기업확인서	1점
7	청년친화 강소기업	청년친화 강소기업 인증서	1점
합계			10점

※ 각 우대사항에 대하여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초격차 분야: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미래모빌리티, 핵심소재, 지능형로봇, 첨단제조, 항공·방산, 차세대원자력, 첨단바이오, 에너지신산업

나. 선정 결과

○ W브릿지(www.wbridge.or.kr)에 선정공고 공지

다. 선정절차 및 일정

모집공고	신청접수	요건심사	선정평가	선정공고
2023.04.17.	→ 2023.04.17.~05.16.	→ 2023.05.17.~05.19.	→ 2023.05.22.~05.25.	→ 2023.05.29. 예정
WISET	WISET	WISET	평가위원단	WISET

※ 상기 절차 및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유의사항

- 지원 선정된 기업 및 인력은 신청 자격을 상시 유지하여야 함
- 정부지원금은 지원인력의 인건비로만 사용 가능
- 사업의 수혜를 받은 기업 및 인력은 지원종료 후 2년까지 인력의 경력현황에 대한 육성재단의 조사 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음
-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함

- 사전 지원대상 제외 기업 및 인력이 지원을 받았을 경우, 타 정부지원사업에서 인건비 이중수혜가 발생할 경우, 기업 및 인력의 신청자격이 유지되지 않은 경우 등
- 이 경우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환수 및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 정부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내역 확인방법 : 워크넷(www.work.go.kr) → 마이페이지 홈 → 온라인 신청관리 → 정부지원 일자리 탭 선택 → 일자리 참여 내역 조회(일자리 신청 내역 아님, 지원인력 개인이 조회 가능, 협약 시 증빙서류 제출)
 - ※ 교육훈련 참여 및 참여기간이 종료된 건은 중복지원에 해당하지 않음
- 지원 인력은 연구개발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함
- 지원기업은 인력이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에서 제공하는 교육훈련(필수)에 참여하도록 지원하고, 인력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평가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 지원기간 중 지원인력 퇴사 시, 잔여 지원기간이 2개월 이상 남아 있을 경우에 한하여 매칭조정심의를 거쳐 대체인력 지원 가능
- 동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및 인력은 상호간의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기업은 인권경영 이행 및 조치에 협조해야 함
- 위의 준수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사업 협약 해약이 가능함

7. 문의처

-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사업운영실 R&D경력복귀지원팀
- 02-6411-1064 / cmh125@wiset.or.kr
- 문의전화가 많아 전화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하시고 문의 바랍니다.

참고 1

사전지원제외 대상

□ 신청 기업

- 신청 기업, 기업의 대표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기업
- 다음의 '신청제외 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 신청제외 기관 >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장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6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장식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신청 인력

- 한국인(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동 사업으로 이미 지원을 받은 인력(중도협약해약자 포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인력
- 신청 기업의 대표자가 참여인력으로 신청한 경우
- 최종 퇴사일 기준 1년 이내 신청기업에 재입사한 자
- 신청 기업의 대표(사업주)와 친족 관계에 있는 자

< 친족관계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 기타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경우 동 사업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음.

참고 2 2023년 사업 추진 절차

절차	내용	수행주체
사업 공고	· 신규 지원 기업 및 인력 모집 공고	WISET
↓		
사업 신청 접수	· 사업 신청서류 접수 (온라인, www.wbridge.or.kr) ※ 기업과 인력 모두 신청하여야 함	신청기업 신청인력
↓		
선정평가	· 선정평가 진행 및 결과 통보	WISET 평가위원단
↓		
협약체결 사업비 지급	· 선정 기업 대상 협약체결 진행 후 사업비 지급	WISET 지원기업/인력
↓		
지원인력 교육훈련 지원	· 지원인력 연구역량강화 교육(필수) · 자기주도형 전문기술 교육비 지원(필수)	WISET 지원인력
↓		
중간점검 및 현장점검	· 사업수행 중간점검 및 현장점검	WISET 지원기업/인력
↓		
결과보고 접수 및 사업비 정산	· 결과보고서 접수 ·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에 대한 회계정산 실시	WISET 지원기업/인력
↓		
추가 지원	· 추가지원 대상 추가지원금 지급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 금액 유동적)	WISET

※ 상기 절차 및 일정은 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관련하여 별도 안내 예정